

도도	일요	일요
발행	지표제공	특정 회견
과장		과장

기안용지

(전화: 731~634)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30310- (1)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88. 5. 3

시행상 특별취급	
-------------	--

시 장

[Handwritten Signature]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강창구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Handwritten]

시설계획과장 [Handwritten]

협조통제관 [Handwritten]

문서통제	
발송인	

인수 수신 감조	
----------------	--

시 장

[Handwritten Stamp]



제 목 도시계획사업(입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제 1 안

수 신 내부결재

제 목 감은건

1. 목동지구개발사업 소장으로부터 양천구 목동 406일대 도시계획사업 (입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동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 호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이므로

2.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6 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도포폐지) 결정코져 합니다.

0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구분	종 류	폭면(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3-172	25	170	대3-147	목동406-10	
폐지	대3-172	25	170	대3-147	목동406-10	85.5.8 폐지방침
기정	소 1-1	10	130	목동406-343	목동406-334	대3-149 와 중복
폐지	소 1-1	10	130	목동406-343	목동406-334	
기정	소 2-1	8	185	목동406-308	목동406-221	토지이용 (환지계획)
폐지	소 2-1	8	185	목동406-308	목동406-221	
기정	소 2-2	8	210	목동406-321	목동408-169	대3-147 와 중복
폐지	소 2-2	8	210	목동406-321	목동408-169	
기정	소 3-1	4	185	목동406-321	목동406-343	
폐지	소 3-1	4	185	목동406-321	목동406-343	토지이용 (환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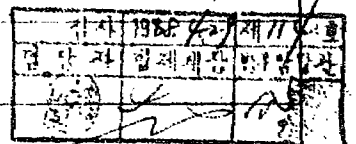
끝.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고시

1.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을 도시계획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와 목동지구

도시계획국

개발사업소(토목공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88. 4

서울특별시

가. 변경결정 조서 : 제1안 이기시행

나. 도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양천구청 도시정비과

목동사업소(토목공사과)비치도면과 같음

끝.

제 3 안

수 신 건설부장관

참 조 도시계획과장

제 목 같은건

1. 우미시 관내 양천구 목동 406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4 안

수 신 양천구청장

참 조 도시정비과장

제 목 같은건

1. 귀구 관내 목동 405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내 도시

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

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하고

2. 사업 시행부서인 목동사업소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정확한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등)을

대조 확인하여 시행할 것.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5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같은건

1. 양천구 목동 406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내 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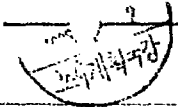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수신처 : 시설계획과장, 도로과장

제 6 안

수 신 총무처장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도토) 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7 안

수 신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

제 목 같은건

1. 귀소에서 요청한 양천구 목동 406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토)변경결정 요청은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법 절차에 의해 양천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시행키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